

서울특별시

의과 (757694 1977. 9. 2.

수신 수신격합조

제목 임시직 의사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및 임시의사 보수 지급요령시달

서울특별시 임시직의사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및 서울특별시  
임시의사 규취에 따른 임시의사 보수 지급 요령을 별첨과 같이 시달  
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것.

첨부 서울특별시 임시의사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1부. 끝.

(원본) 7월 9일 지출증빙서류이 보낸

서울특별시장

수신격 처사6-18, 처사22-27, 보건행정과

서울특별시 임시의사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이하 임상연구비라 칭한다)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 임상연구비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임시직 의사에게 지급한다.

제3조 (임상연구비 지급 기준) 임시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의 월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지급 구분) 임상연구비는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결과보고) 임상연구비를 시행하는 기관장은 (본청은 주무과장) 매 분기당 임상연구비 지급상황 별표2의 연구실적을 별표3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7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붙임

- 가. 본 임상연구비 지급에 따라 서울특별시 임시 의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실적수당을 "병" 등급으로 개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 나. 동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사중 "전문"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과장에 준하여 적용함.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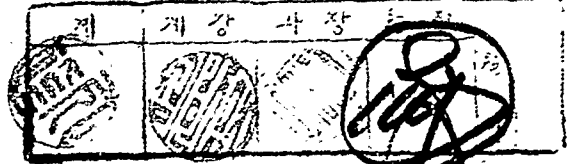
회계 1242-

78-6584

78. 1. 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대통령령 송부



1. 직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대통령령 (본약정의 관세율 변경) 료본과 일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통령령 제882호 일 882호 1부. 끝.

무 수 처 리 인	정수시	78. 1. 11.	결재	
	수신처	46	수행	
	수신처		처리	년 월 일
	수신처		지시사항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과1-71, 서구1-13, 서출1-2, 서사1-69, 직활6

재 부 부

조 정 1242-1103 (70-2223) 1977. 12. 31.

수 신 수신처 참조

개 목 대동령령 송부

별첨과 같이 대동령령 제8834호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등의 관세를 변경에 관한 규정) 및 제883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2등의 규정에 의한 원지등의 관세율등 변경에 관한 규정)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동령령 제8834호 및 제8835호. 끝.

재 부 부 장 관

수 신 처 :

대통령령 제 8834 호

1978년 1월 4일 공포

관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변경하는 물품과 그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세결표 번호	품 명	세 율
1503	종 분	무 세
1504	1. 변양	무 세
1505	증계와 증추	무 세
1506	종 토	무 세
1507	2종 대력	무 세
1508	4. 대두	15 %
1509	1. 우지	10 %
1510	유황(승화유황, 할칼유황 및 콜로이드 유황을 제외 한다)	5 %

관세표 번호	품명	세율
2601	금속광, 정광 및 하소현 황화철강 (건전 치 제조에 적합한 광산광 및 특출원 산드를 제외한다)	무세
2710	2. 동기 및 그 조제품	무세
	3. 경기	무세
	4. 동기	무세
	5. 의 광산 선관기 (나프제외의 원 및 아르 마티오일 에 포함한다)	15%
2714	2. 의 가 석유 아스팔트	무세
2820	1. 의 가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 제련용 위 것에 포함한다)	5%
2844	농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선제 합성응원초를 포함한다)	무세
2901	1. 의 각종 부러지엔	10%

	4. 벤젠	10 %
2902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1의 가. 염화비닐 모노머	15 %
2903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2905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2906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2907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2908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2909	농업약제로 사용하는 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한다)	무 세

관세표 번호	품명	세율
	천료를 포함한다)	
2912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13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14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16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2의 가중·구연산)	무세 50%
2917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19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 21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한다)	무 제
29 22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 한다)	무 제
29 23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한다.)	무 제
29 24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한다)	무 제
29 26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한다)	무 제
29 27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 한다)	무 제
29 29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원료를 포함한다)	무 제
29 30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응 5~	

관세표 번호	품명	세관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31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32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33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34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35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37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료를 포함 한다)	무세
2944	농업약제로 사용하는것 (원제 합성용 원	

	호를 포함 한다)	무	세
3002	면역형성, 미생물성 패시인, 독소, 미생물 매양체 (활호 미생물을 포함하며 효모를 제외 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질	무	세
3701	엑스선용 필름	20	%
3702	엑스선용 필름	20	%
3811	농업약제로 사용 하는 것 (천로상표의 것을 포함한다)	무	세
3819	1. 증 실리카 베이스 폴리브데늄계 촉매 3. 의 각종 크롬광 배스플	10	%
		5	%
4403	농어촌 주택 개량용의 원부 3. 의 가 압양제 (치이크를 제외한다)	무	세
		5	%
4701	3. 의 나 4. 의 나 5. 및 6. 에 해당 하는 필포	20	%
4801	전기 절연지 및 콘덴서지의 권지	25	%

관세표 번호	품명	세 율
4807	2의 라중 콘덴서지	30 %
4815	2중 콘덴서지	30 %
4911	따로 계기판 컷 이외의 인쇄물 (인쇄판 서회와 사진을 제외 한다)	무 세
5501	편	무 세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용액용의 것을 포함한다)	1 %
7315	3의 나 스테인레스강 또는 니켈강 컷	10 %
	4의 가 고온소강의 컷	10 %
7316	1의 라 1 미터당 45킬로 그램을 초 과하고 70킬로 그램 이하의 컷	무 세
7401	1의 나 시멘트 등	5 %
	2.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
8205	플링 쿼츠의 편지	10 %

8406	2중 압축결핵의 내연기관	10%
8406	5 별제 이외의 내연기관	
	나 기 타	
	(1) 자주식 철도용 객차의 것	무 세
	(2) 기 타	
8406	6의 나뭇 다중 노즐 및 노즐홀더	
	(원제품을 리드 할 때)	11%
8438	1 제2433호의 제기관 기계류의 부분	
	품과 부속품	5%
8444	금속 압연기의 롤 (주철의 것으로서)	
	개량 중량 15톤 미만인 것	33%
8606	철도용의 공작차, 가증기차 및 기차	
	작업차	무 세
9024	철도용 온도 측정조절기	60%

관세율표 번호	품명	세율
9028	4. 비전자식 자동조정기 (조절장치를 포함한다)	20%
	5. 기구	20%
9814	분무기의 두부	50%

## 부 칙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영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도

번호 제1502호 제4403호 (농어촌 주택개발촉

진법은 제외한다.) 및 제5501호에 적용되는 물

품의 세율은 1978년 1월 30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제외) 이 영에 의하여 인허가된 물품의 세율

이 무제한 물품으로서 기본세율이 100분의 50를 초

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관세에 관한 특례) ① 농어촌 주택개발촉진의 원부

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장에서 제작 및 가공될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수입추천한 관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취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5의 규정  
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응도세환석공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관세의 추정사각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사항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

한다.

- 1. 대통령령 제 8114호 관세법 제 25조의 적용에  
의한 농수등의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 2. 대통령령 제 8452호 관세법 제 25조의 적용에  
의한 중기등의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 3. 대통령령 제 8539호 관세법 제 25조의 적용에  
의한 발전기등의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 4. 대통령령 제 8603호 관세법 제 25조의 적용에  
의한



선박등의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5. 대통령령 제 8612 호 관세법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원부등의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6. 대통령령 제 8639 호 관세법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대륙등의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7. 대통령령 제 8748 호 관세법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아스팔트 등에 관세환 변경에 관한 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의

2 등의 가정에 의한 원재료의 관세환변정에 관한 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의 2의 가정에 의하여 관세환 및 방위세환을 인허 하는 물품과 그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세환표 번호	품명	관세환	방위세환
4101	원피 (면양 모피의 것과 파충류의 것을 제외한다)	0.3%	2.02%
4801	크리프트 라이너	0.1%	0.01%
5101	가발 원사	0.1%	0.01%
5102	가발 원사	0.1%	0.01%
6703	인발	0.4%	0.03%

## 부 칙

- ① (시행 원) 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
- ② (적용 시한) 이 영은 1978년 12월 31일  
까지 수업 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 한다.

(관인 생략)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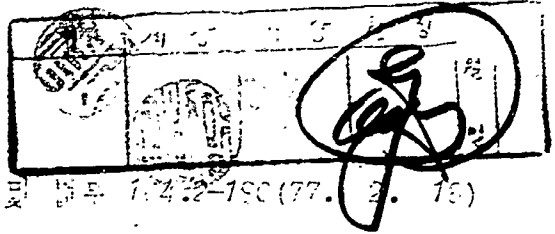
법무 144.2-

(95-6379)

1978. 1. 9.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각종 행정법규집 관리 및 정비에서



1. 내부 104.2-1193(77. 11. 25) 보 및 법무 144.2-190(77. 2. 16)

고의 관련의.

2. 고인 수사에 관한 관공공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것임

'77 1월경 개정된 각종법규집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것임 (대한민국헌정기념집, 작처법규집, 어규집등) 및 참고적용(행정법규집의용본집, 시정판백집)의 관리 및 활용상태에 대해 수선해당 법률규집의 조광조 적시각서 공주하는 각종 행정법규집 관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가. 각종 법규집의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관리직 공무원의 무관심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정법규집을 책이 낡아, 참고등 즉시 활용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식용으로 비치하는 실정인 바, 이는 당시 재정상 남기는 물론 수시로 재정되는 법령에 미흡함은 아니라 법규집 활용 소홀로 각종 행정처분을 영합이 있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간접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하여 소홀도는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게함으로써 시정애 불신감을 가

는 결과로 야기 될 것임. 공주하는 여차한 실정인 바, 이를 유념할 것.

처리	78. 1. 10	결재	공주하는
수신		수령자	
소속		처리한	윤
일련		지사항	

나. 각종 납규집 대본은 지속적인 기재정리가 병행되어야만 실용가치가 있고 즉각적인 참고 및 활용이 가능하므로 중도이 단 1회라도 기재정리를 결산하는 대본 자체가 무용박 되므로 금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추록 수령 즉시 기재정리 토록 할것.

다. 과급 기관장은 다음 참고 사항이 의거 각종 납규집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확인토록 한 것이며 특히 과, 구출 장소장은 관할 동사무소에 배부된 각종 납규집 관리 및 활용 방법을 적극 시도, 관독 기여 범치행정구현에 기여 하도록 할것.

※ 참고 사항 (77. 12. 31 현재)

1) 대한민국 연경년명집	대본 28권	추록 29회
2) 작 처 납 규 집	대본 3권	추록 4회
3) 예 규 집	대본 1권	추록 2회
4) 진의응 단집	대본 1-5권	
5) 시정판력집	대본 1-3권	

10.7 원송  
대본 면치  
배부 계획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과 1-62, 서구 1-13, 서출 1-2, 서사 1-67. 끝.